

前 디자인包裝센터 包裝業務 法 改正으로 全面 削除 97. 4. 7 (假稱) 社團法人 韓國包裝振興院 創立總會 盛了

包裝振興 綜合機構 空白狀態 代替機關으로 設立

1. 産業디자인包裝振興法이 産業디자인振興法으로 改正, 包裝部門 다 없어져 새로운 綜合包裝振興 機構 設立 切實性 惹起

우리나라 産業이 이제 第1期 開發期를 지나, 第2期 先進國으로 進入해가는 局面에 있어, 無限競爭時代에 對應하는 最上의 重要課題는 國際競爭力 強化에 있다 함은 公知의 事實로서, 우리나라 商品이 國際競爭에서 이기기 爲해서는 內容商品의 品質이나, 價格도 重要하나, 內容商品을 보기 前에 첫선을 보는 包裝의 造形 優雅性, 安全強度性, 衛生性이 顧客으로 하여금 商品을 흥정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販賣訴求力을 주는 包裝의 開發振興이야말로 焦眉의 至上課題임에도 不拘하고, 最近까지 包裝振興機關으로 任務를 遂行하여온 産業디자인包裝開發院이 包裝分野에 對한 業務를 數年間에 걸쳐 縮少해 왔으며, 그동안 오랜 期間에 걸쳐 養成된 包裝研究人力의 逐出事態도 있어, 業界研究意志를 霧散시켜오던 차에, 産業디자인包裝振興法에 依據命脈이 維持되 오던 包裝振興計劃마저, 昨年 1996年 12月 30日附로 産業디자인包裝振興法이 法律 題名부터 「産業디자인振興法」으로 變更되어, 産業디자인包裝開發院이 「韓國産業디자인振興院」으로 改編되면서, 包

裝振興計劃과 包裝材料 및 容器의 研究開發, 包裝標準化와 自動化包裝製作 技術指導事業 등 包裝分野 業務가 全部 除外 削除되기에 이르러, 綜合包裝振興機關의 不在 局面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의 代替機關으로 設立된 것이 이른바 (假稱) 社團法人 韓國包裝振興院의 創立인 것이다.

2. 本格 包裝振興 研究開發은 이제부터가 重要

오늘날에 있어서의 包裝의 機能과 技術은 單純한 商品流通上 外力의 侵害로 부터 保護하는 機能이나, 輸送 荷役 保管 使用 便宜性 및 販促機能 뿐만 아니라, Bar Code의 包裝印刷로 流通 情報媒體機能 外에 人類生活의 豊饒화와 消費者 Needs의 高品質 高級品 選好 趨勢에 따라 包裝의 防菌性, 防蟲性, 防臭性, 耐電性, 耐熱性, 鮮度保有性, 衛生 安全性等 包裝의 高機能 技術은 勿論, 地球 環境政策上 包裝材의 環境適應 親和技術과 包裝및 包裝廢棄物 對策 등 包裝産業의 振興課題와 新 包裝技術開發課題가 山積해 있는 狀況이 란 點을 看過해서는 안되며, 이 點을 새롭게 認識할 必要가 있음은 勿論, 本格 包裝振興 研究開發은 이제 부터가 더 重要하다고 보는 것이 業界衆論이다.

3. 包裝生產團體 組合·協會, 包裝業界, 包裝素材業界, 包裝機械業界, 物流業界, 包裝使用業界, 包裝學界·研究學會 代表 總網羅 發起·創立總會

이에 同 (假稱) 社團法人 韓國包裝振興院은 包裝生產團體組合·協會인 韓國골板紙包裝工業協同組合(理事長 柳鍾宇), 韓國非鐵金屬工業協同組合 聯合會(會長 金鍾仁), 韓國유리工業協同組合(理事長 尹菊鉉), 韓國製罐工業協同組合(理事長 李喆淳), 韓國製紙工業協同組合(理事長 柳熙潤·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副會長), 韓國종이갑工業協同組合(理事長 吳鍾漢), 韓國紙袋工業協同組合(理事長 俞吉相), 韓國紙函工業協同組合(理事長 李大估), 韓國環境紙類包裝協會(會長 李光文) 등이 主軸이 되고, 包裝材生產業界 및 包裝使用業界와 包裝機械業界, 包裝素材業界, 物流業界, 그리고 包裝學界, 研究學會團體 등을 總網羅한 名實相符한 綜合包裝振興機關 設立의 必要性和 緊要성을 切感하고, 包裝產業은 1部 大企業을 除外하고는 全部가 中小企業型인 點을 勘案하여 中小企業包裝產業의 重點 振興을 指標로 하여, 近代 包裝管理對象 包裝材인 ① 紙類包裝 ② 合成樹脂包裝 ③ 金屬包裝 ④ 유리包裝 ⑤ 木材包裝 ⑥ 包裝素材 ⑦ 包裝機械 의 振興과 ⑧ 包裝標準 物流振興 및 ⑨ 環境 適應包裝振興을 圖謀함으로써 包裝 物流 Cost Down 合理化和 國際 競爭力 強化에 寄與하고자 同 包裝關聯 各界 人士 및 言論界 등 95名이 參席한 가운데, 지난 97. 4. 7일 서울 팔레스호텔 1層 로얄볼룸에서 同 (假稱) 社團法人 韓國包裝振興院 創立總會를 盛大히 開催하였다. 同 (假稱) 社團法人 韓國包裝振興院의 創立은 紙類包裝, 金屬包裝, 유리包裝, 合成樹脂包裝, 木材包裝, 環境包裝生產者團體 및 同 業界, 素材, 機械, 物流 業界·學會 中, 이의 設立을 共感하는 10個 組合 協會 理事長이 發議하여

- ① 1997. 1. 24日 (假稱) 社團法人 韓國包裝振興院 設立推進 委員會를 開催하고 이의 設立推進을 公式宣言
- ② 1997. 3. 27日 同 (假稱) 社團法人 韓國包裝振興院

設立 發起人 各界 27名이 出席 同 發起人大會 開催

③ 1997. 3. 31日 (假稱) 社團法人 韓國包裝振興院 創立總會 開催 新聞 公告 및 紙類包裝·金屬包裝·유리包裝·合成樹脂包裝·木材包裝·環境包裝 生產者 團體 및 同 業界, 同 包裝材料 素材業界, 同 包裝機械業界, 同 包裝使用業界, 同 包裝·物流 學界, 學會 代表에게 同 韓國包裝振興院 設立 創立總會 開催通知를 하여

④ 1997. 4. 7일 同 (假稱) 社團法人 韓國包裝振興院 設立 創立總會를 開催 하였다.

4. 初代 院長에 柳熙潤 製紙 理事長 兼 中央會 副會長 副院長인 金鍾仁 非鐵理事長·柳鍾宇 골板紙包裝 理事長

이날 (假稱) 社團法人 韓國包裝振興院 創立總會는 參席한 貴賓, 大學教授, 業界元老·代表 및 團體長의 人事紹介가 있는 後, 柳熙潤 發起人代表의 開會宣言에 이어, 國民儀禮와 創立推進經過報告 그리고 發起人代表의 開會辭가 있었으며, 이어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朴相熙 會長의 激勵辭와 韓國필프·종이工學會 兼 韓國包裝學會 辛東韶 會長 및 韓國木材工學會 趙炳默 會長의 祝辭가 있었다. 이어 議案審議에 들어가, (假稱) 社團法人 韓國包裝振興院 定款 制定의 件을 上程하여 原案中 1部를 條正 通過하였으며, 院長, 副院長, 理事, 監事 選任에 있어, 院長인 柳熙潤 發起人代表 (韓國製紙工業協同組合 理事長, 中小企業協同組合 中央會 副會長), 副院長인 金鍾仁 (韓國非鐵金屬協同組合聯合會 會長)·柳鍾宇(韓國골板紙包裝工業協同組合理事長)이 選任되었으며, 그外 理事 및 監事를 選任하고, 1997년도 事業計劃 및 豫算案을 1部 條正承認하였다. 同 (假稱) 社團法人 韓國包裝振興院 發起趣旨文과 同 發起人 名單, 定款, 事業計劃要旨 및 이날 選任 되어 就任承諾을 한 任員名單은 다음과 같다.

(假稱) 社團法人 韓國包裝振興院 設立
發 起 趣 旨 文

1. 오늘날의 國際經濟社會는 WTO 體制의 開幕과 Green Round의 展開 및 PL法の의 擡頭, 그리고 包裝 및 包裝廢棄物의 Recycle (再活用), Reuse(再使用), Reduce(減量) 問題가 새로운 產業社會 課題로 提起되고 있으며
2. 오늘날의 包裝機能技術 또한 單純한 商品流通上 外力의 侵害로부터의 保護性이나, 輸送·荷役·保管·使用 便宜性 및 販促機能 뿐만 아니라, Bar Code의 包裝印刷로 流通情報媒體機能 外에 人類生活의 豐饒化와 消費者 Needs의 高品質·高級品 選好 趨勢에 따라 包裝의 防菌性, 防蟲性, 防臭性, 耐電性, 耐熱性, 鮮度保有性 等 衛生·安全性 等 包裝의 高機能 技術은 勿論, 地球 環境政策上 包裝材의 環境 適應親和技術과 包裝 및 包裝廢棄物 對策 等 包裝產業의 振興課題와 新 包裝技術開發課題가 山積해 있는 緊迫한 現 時點에 있어
3. 그동안 産業디자인包裝振興法上 包裝振興計劃을 爲始한 中小包裝產業의 技術支援政策 造成 業務를 擔當하여오던 産業디자인包裝開發院이 지난 1996年 12月 30日附로 産業디자인包裝振興法이 法律 第 5214號로 改正公布되면서 法律名稱 부터『産業디자인振興法』으로 變更되어, 韓國産業디자인振興院으로 改編되면서, 同法에서 包裝振興 計劃과 包裝材料 및 容器의 研究開發, 包裝標準化와 自動化 包裝製作 技術 指導事業 等 包裝分野業務가 全部 除外 削除되기에 이르러, 綜合包裝振興機關의 不存在 局面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4. 이에 包裝材生産業界 및 包裝使用業界와 包裝機械業界, 包裝素材業界, 物流業界, 그리고 包裝學界, 研究學會團體 等を 總網羅한 名實相符한 綜合包裝振興機關 設立의 必要性和 緊要성을 切感하고, 包裝產業은 1部 大企業을 除外하고는 全部가 中小企業型인 點을 勘案하여 中小企業包裝產業의 重點 振興을 指標로 하여, 近代 包裝管理對象 包裝材인 ① 紙類包裝 ② 合成樹脂包裝 ③ 金屬包裝 ④ 유리包裝 ⑤ 包裝機械 ⑥ 包裝素材의 振興과 ⑦ 包裝標準 物流振興 및 ⑧ 環境 適應包裝振興을 圖謀 함으로서 包裝·物流 Cost Down 合理化和 國際 競爭力 強化에 寄與하고자
5. 오늘날의 無國境, 無限競爭時代에 있어, 商品의 品質이나 價格評價 競爭에 앞서 첫선을 보여주는, 新 國際競爭要素로 登場한 包裝產業, 包裝經濟·技術의 振興을 管掌할 (假稱) 社團法人 韓國包裝振興院의 設立을 發起하는 바이다.

1997年 3月 27日

(假稱) 社團法人 韓國包裝振興院 設立 發起人 一同

(假稱) 社團法人 韓國包裝振興院
發起人名單

<가나다順>

<發起人 大會 : 1997. 3. 27 서울팔레스호텔>

名 稱	代 表 者	職 位	包 裝 種 類
[包裝團體]			
韓國골板紙包裝工業協同組合	柳 鍾 宇	理事長	골板紙包裝
韓國非鐵金屬工業協同組合聯合會	金 鍾 仁	會 長	金銀箔紙
韓國유리工業協同組合	尹 鞠 鉉	理事長	유리包裝
韓國製罐工業協同組合	李 喆 淳	理事長	金屬 캔
韓國製紙工業協同組合	柳 熙 潤	理事長	包 裝 紙
韓國종이컵工業協同組合	吳 鍾 漢	理事長	종이 컵
韓國紙袋工業協同組合	俞 吉 相	理事長	紙 袋
韓國紙函工業協同組合	李 大 佶	理事長	골板紙 板紙箱
韓國環境紙類包裝協會	李 光 文	會 長	Pulp Mold
[包裝學界·學會]			
江原大學校	李 鎔 奎	製紙工學科長	製紙工學
龍仁工業專門大學	李 宣 鎬	教 授	製紙工學
株式會社 包裝產業	尹 錫 重	代表理事	包裝出版
韓國木材工學會	趙 炳 默	學會長	木材包裝
韓國物流學會	玉 璇 鍾	學會長	物 流
韓國包裝學會	辛 東 韶	學會長	綜合包裝
[包裝業界·機械業界]			
金豐實業株式會社	柳 芳 遠	代表理事	紙 袋
大元包裝工業株式會社	金 順 在	代表理事	紙 函
東洋製紙株式會社	李 義 範	代表理事	包 裝 紙
鮮光電源株式會社	權 炳 茂	代表理事	유리包裝
新大洋製紙株式會社	權 赫 弘	代表理事	素材: 골芯紙
亞細亞製紙株式會社	李 潤 茂	代表理事	素材: 라이너
LG電線(株)機械 CU	柳 桓 德	代表理事	包裝機械
宇星產業株式會社	許 仁 熙	代表理事	緩衝包裝材
朝日製紙株式會社	李 敬 雨	代表理事	크라프트紙
泰林包裝工業株式會社	丁 東 燮	代表理事	골板紙包裝
韓國輸出包裝工業株式會社	許 容 三	代表理事	골板紙·原紙
和成機械工業株式會社	高 光 益	代表理事	包裝機械

(假稱) 社團法人 韓國包裝振興院
定 款 (案)

第 1 章 總 則

第 1 條 (名 稱) 本院은 社團法人 韓國包裝振興院 (The Korea Packaging Promotion Corporation : K PACK C)이라 稱한다.

第 2 條 (目 的) 本院은 國內用 및 輸出振興을 爲한 輸出包裝材 別 包裝工業, 同包裝素材, 同包裝機械의 振興造成과 包裝의 高機能, 新技術開發, 包裝의 標準化·物流合理化 및 環境適應化를 圖謀함으로서 國民經濟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 條 (事 業) ① 위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事業을 行한다.

1. 紙類包裝, 合成樹脂包裝, 金屬包裝, 유리包裝, 木材包裝 및 其他 重要包裝(以下 包裝이라 한다)의 振興 基本計劃과 包裝 中小企業育成施策(案) 樹立
2. 包裝素材(紙類包裝原資材, 合成樹脂包裝原資材, 金屬包裝原資材, 유리包裝 原資材, 木材包裝原資材, 其他包裝素材) 開發振興事業
3. 包裝機械(包裝材製造 機械·自動包裝作業機械) 開發事業
4. 包裝의 新技術·新機能 開發 事業
5. 包裝 및 包裝 廢棄物 再活用, 再使用, 減量, 環境親和 包裝 開發 振興 事業
6. 包裝 Module 設定·包裝VAN 造成·物流合理化 事業
7. 輸出振興 對外 競爭力 向上을 爲한 輸出包裝 開發事業
8. 包裝產業 經營 技術指導事業
9. CAD 包裝設計 System 開發事業
10. CAM 包裝製造 System 開發事業
11. 包裝品質設定 및 ISO 團體標準 認證事業
12. 包裝試驗 研究事業
13. 調查 統計, 包裝材別 需給計劃, 包裝情報化 事業
14. 包裝展示事業
15. 包裝教育 Packaging School 定期講座 開設·研修事業
16. 包裝 人力養成 職業訓練院 運營
17. 出版 및 弘報事業
18. 國際 交流 協力 事業
19. 政府 協力 事業

20. 其他 附帶事業

- ② 前項 1號의 包裝振興基本計劃 및 包裝中小企業育成施策(案)에는 다음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政府政策에 反映할 包裝 基本政策 案
 2. 包裝 및 包裝中小企業振興의 國際化目標·對象 및 實施方法
 3. 包裝專門人力 養成에 關한 事項
 4. 其他 包裝振興을 爲하여 必要한 事項
- ③ 本院이 第1項의 事業 施行上 必要에 依하여 收益事業을 經營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主務官廳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4 條 (業務管轄 및 事務所의 所在地) ① 本院의 業務管轄은 全國을 對象으로 한다.

- ② 本院의 本部는 서울特別市에 두고, 必要한 地域 또는 海外에 支會 또는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第 5 條 (公 告) 本院의 公告는 서울 特別市에서 發行하는 日刊新聞에 依하여 이를 行한다.

第 6 條 (規程 및 準用 法令) ① 本 定款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規程으로 定한다.

- ② 本 定款 또는 規程으로 定한 事項 外에는 通商産業部 長官 및 그 所屬 廳長의 主管에 屬하는 非營利 法人의 設立 및 監督에 關한 規則 및 民法과 工業發展法 中 法人에 關한 規定 또는 慣例를 準用한다.

第 2 章 會 員

第 7 條 (會員의 種類와 資格) 本院의 會員의 種類 및 資格은 다음과 같다.

1. 團體會員 : 包裝生產團體, 包裝素材團體, 包裝機械團體, 物流團體, 包裝研究·學術關係 團體 等
2. 企業會員 : 前號의 團體에 加入 또는 未加入 企業體와 包裝使用 企業體
3. 個人會員 : 包裝研究家, 學界, 一般人, 學生 等 個人會員
4. 特別會員 : 前 1號 및 3號 以外의 團體 및 篤志家

第 8 條 (會員加入節次) 本院의 會員이 되고자하는 者는 前條 規定의 資格別로 會員加入節次規程에 따라 加入申請을 하여, 理事會의 資格審査를 받아 本院에 登錄한다.

第 9 條 (會員의 權利) ① 本院의 會員은 다음 各號의 權利가 있다.

1. 總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權利
 2. 總會에서의 議決權
 3. 選舉權 및 被選舉權
 4. 關係證明을 發給 받을 權利
 5. 本院에서 發行하는 刊行物 資料를 受取할 權利
- ② 特別會員은 第1項 2號 및 3號는 該當되지 아니한다.

第 10 條 (會員의 義務) 本院의 各種 會員은 다음 各號의 義務가 있다.

1. 定款, 規程과 總會 및 理事會 決議事項을 遵守할 義務
2. 本院의 經費의 一部로서의 會費 負擔義務

第 11 條 (會員資格의 脫退와 喪失) 本院의 會員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될 때에는 會員의 資格을 喪失하고, 本院에 對한 一切의 權利도 同時에 喪失된다.

1. 死亡 또는 解散 (法人의 境遇)
2. 本人의 申請에 依하여 加入登錄을 任意로 取消 脫退하였을 때
3. 除名處分 하였을 때

第 12 條 (會員의 除名事由) 本院의 會員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境遇에는 理事會의 決議로 除名 處分할 수 있다.

1. 本院의 定款, 規程 및 總會, 理事會의 決議 事項을 遵守하지 아니할 때
2. 本院의 名譽를 毀損 하였을 때
3. 會費를 長期間 未納하였을 때

第 3 章 組織 및 任員

第 13 條 (組織 및 任員) ① 本院의 機構 組織의 細部事項은 組織 및 職制 規程으로 定한다.

② 本院에는 다음 各號의 任員을 둔다

1. 院長 (非常勤) 1人
2. 副院長 (常勤 또는 非常勤) 2人 以內
3. 常任理事 (常務理事 또는 專務理事) 2人 以內
4. 理事 (非常勤) 11人 以上 25人 以內
5. 監事 (非常勤) 2人 以內

③ 本院에는 다음 各號의 包裝振興 政策審議機構 및 委員會를 둔다.

1. 包裝振興政策審議會는 包裝 物流에 關한 學識과 經綸이 높은 包裝生産團體長中에서 5人 以內, 包裝機械, 包裝素材, 物流, 包裝使用 業界 代表中에서 4人 以內, 學界·學會에서 2人 以內, 研究界에서 4人 以內, 政府人士 2人 以內 等 11人乃至 17人으로 構成한다.
3. 本院에는 包裝振興政策企劃을 爲하여 包裝振興政策企劃委員會를 둔다.
4. 本院에는 各 包裝材別, 振興部門別 專門 部會를 두며, 各 專門部會 委員數는 7人 乃至 11人 以內로 한다.

第 14 條 (任員 및 委員의 選出) ① 院長 및 副院長 (非常勤)은 包裝生産團體長 또는 包裝에 關한 學識과 經綸이 높은 人士 中에서 總會에서 選出한다.

② 理事 및 監事는 總會에서 委囑된 10人乃至 15人의 詮衡委員會에서 選出한다.

③ 任期 滿了 3個月前에 任員 全員の 躡位가 發生한 때에는 臨時 總會를 開催하여 任員을 補選하여야 한다.

이때의總會召集權者는院長·常勤 또는非常勤 副院長이었던者 順으로하거나,任員이었던者中 年長者 順으로行한다.

④ 常勤任員인 常勤副院長 및 常任理事 (또는 專務理事)는 院長의 提請으로 理事會에서 選任한다.

⑤ 包裝振興政策審議會 委員은 包裝에 關한 學識과 經綸이 높은 包裝 生産 團體長, 包裝材聯關生産 使用 等 業界, 包裝學界, 包裝學會·研究界 및 政府人士 中에서 理事會에서 委囑한다.

⑥ 包裝振興政策 企劃委員會 委員은 包裝에 關한 學識과 經綸이 높은 人士 및 包裝生産團體 (組合協會) 의 專務理事級 當然職 委員을 理事會에서 委囑한다.

第 15 條 (任員 및 委員의 任期) ① 院長, 副院長,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그러나 任期 滿了日은 任期 滿期日로부터 가장 가까운 前後의 定期總會日까지로 한다.

② 任員이 任期中 厥位된 때에는 厥位以後의 첫번째 總會에서 補選한다.

③ 前條 第3項의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한다.

④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前 第2項 乃至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16 條 (任員의 資格) ① 非常勤 任員의 資格은 第 7條의 會員資格이 있으며, 包裝에 關한 經綸이 높고, 다음 第 17條 規定의 任員 資格의 缺格事由가 없는 人士로 한다.

② 常勤任員의 資格은 包裝에 關한 學識과 經綸이 높은 非事業者中, 다음 第17條의 任員 資格의 缺格事由가 없는 人士로 한다.

③ 常勤任員은 다른 職務를 兼任할 수 없다. 다만 政府, 關聯團體의 委員이나, 包裝關係學校의 講義 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7 條 (任員資格의 制限) 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者는 本院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禁治産者 및 限定治産者와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者

2. 法律 또는 法院의 判決에 依하여 資格이 喪失 또는 停止된者

3. 禁錮 以上の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2年을 經過하지 아니한者

② 第 1 項의 事由가 發見되거나 發生한 때에는 그 任員은 自然退職된다.

③ 第 2 項에 依하여 退職한 任員이 退職前에 關與한 行爲는 그 效力을 喪失하지 아니한다.

第 18 條 (院長 및 副院長의 職務)

① 院長은 本院을 代表하고 本院의 業務를 總括 한다.

② 副院長은 院長을 補佐하고, 院長 有故 時 院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이때 職務代行的 順位는 常勤副院長, 非常勤 副院長, 常任理事 順으로 한다.

第 19 條 (常任理事의 職務) 常任理事는 院長을 補佐하여 本院의 通常 業務를 管掌한다.

第 20 條 (監事の職務) 監事の職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法人의 財産狀況을 監査하는 일.
2. 理事의 業務執行 狀況을 監査하는 일.
3. 財産狀況 또는 業務執行에 關하여 不正 不備한 것이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이를 總會, 理事會 또는 主務官廳에 報告하는 일.
4. 前號의 報告를 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에는 總會 또는 理事會를 召集하는 일.
5. 理事會 및 總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하는 일.

第 21 條 (任員의 報酬) 常勤副會長 또는 常任理事에 對하여는 所定の 報酬를 支給한다. 非常任 任員은 無報酬를 原則으로 하며, 豫算의 範圍內에서 業務執行上 所要된 實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 4 章 會 議

第 22 條 (會議 種類) 本院의 會議는 總會와 理事會 및 各級 委員會 3種으로 한다.

第 23 條 (總會) ①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 2種으로 한다.

- ② 定期總會는 每年 1回, 每 會計 年度 終了日로부터 2個月 以內에 開催한다.
- ③ 臨時總會는 院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總會員 3分の 1以上으로부터 會議의 目的事項을 書面으로 提示하여 請求한 때에 院長은 臨時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 ④ 前項의 請求가 있는 後, 2週間 內에 院長이 總會 召集의 節次를 밝지 아니한 때에는 請求한 會員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이를 召集할 수 있다.

第 24 條 (總會 召集 節次) 總會의 召集은 1週間 前에 그 會議의 目的 事項을 記載한 書面을 各 會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 25 條 (議長) 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은 院長이 된다.

第 26 條 (決議 方法) ① 總會 및 理事會의 決議는 本 定款 또는 民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會員 또는 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會員 또는 理事의 議決權의 過半數로서 한다. 但 可否 同數인 때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 ② 總會에는 會員의 所屬團體 또는 企業體의 幹部社員 以上 또는 他會員에게 委任 出席케 할 수 있으며, 書面決議로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다. 이때, 委任 代理出席 및 書面決議를 出席會員으로 본다.
- ③ 本院과 任員 또는 會員間에 訴訟 當事者 關係 事項이거나, 金錢 또는 財産上 利害關係가 있는 事項에 對하여, 그 任員 또는 會員은 總會 및 理事會의 議決權이 없다.

第 27 條 (總會의 決議 事項) 總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決議한다.

1. 定款 改正
2. 事業 計劃 및 事業報告 承認
3. 豫算 및 決算 承認
4. 會員의 除名
5. 本院의 解散과 合併
6. 任員의 選出 및 解任
7. 其他 定款으로 定하는 事項

第 28 條 (理事會) 理事會는 每 分期別 定期的으로, 또는 隨時 院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이를 召集한다.

第 29 條 (理事會 決議事項) 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決議한다.

1. 豫算 및 決算書 作成에 關한 事項
2. 重要 業務計劃 및 執行에 關한 事項
3. 會員의 資格 審査에 關한 事項
4. 總會의 附議 事項, 總會의 委任事項
5. 常勤 任員의 選任 및 解任에 關한 事項
6. 會員의 會費의 基準 策定에 關한 事項
7. 規程의 制定 改正 또는 廢止에 關한 事項
8. 附帶事業等과 關聯한 行政 手數料率 基準의 策定에 關한 事項
9. 其他 定款 또는 規程으로 定하는 事項

第 30 條 (緊急措置) ① 總會의 決議를 要하는 事項으로서 緊急을 要하는 境遇에는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院長이 이를 執行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執行事項은 다음 總會의 追認을 얻어야 한다.

第 31 條 (議事錄) ① 總會 및 理事會의 議事に 關하여는 議事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② 議事錄에는 議事の 經過 要旨 및 結果를 記載하고, 議長 및 出席員 2人 以上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第 5 章 事 務 局

第 32 條 (部署) ① 本院 事務局에 第 3條 規定의 本院의 事業 遂行에 相應한 部署를 둔다.

② 事務局의 組織 및 職務分掌은 組織 및 職制規程으로 定한다.

第 33 條 (職員의 任免等) ① 職員은 院長이 이를 任免한다.

② 職員은 公開採用을 原則으로 한다.

第 6 章 財產 및 會計

第 34 條 (會計 年度) 本院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依한다.

第 35 條 (財務等) 本院의 財產 및 經費는 다음 各號의 收入으로 充當하되, 基本財產이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理事會의 決議에 依하여 定한다.

1. 包裝振興基金
2. 會費
3. 協贊特別會費
4. 政府支援金
5. 本院의 設立目的에 相應한 事業의 收益 및 附帶事業收入 (行政手數料 包含)

第 36 條 (事業計劃 및 豫算編成) 本院은 每會計年度 開始 2月 以內에 事業計劃 및 豫算을 編成하여 總會의 承認을 얻어 主務官廳에 報告한다.

第 37 條 (事業報告 및 收支決算書作成) 本院은 每會計年度 終了後 2月 以內에 當該年度 事業報告書 및 收支決算書를 作成하여, 總會의 承認을 얻어 主務官廳에 報告한다. 決算書에는 財產目錄,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및 監查報告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第 7 章 設立 및 解散

第 38 條 (法人의 設立) 本院의 設立은 社團法人 韓國包裝振興院 創立總會에서 定款을 制定한 後, 主務官廳의 設立許可를 얻어 管轄法院에 登記를 함으로서 設立된다.

第 39 條 (存立時期) 本院의 存立期限은 다음 第40條의 事由에 依하여 解散할 때 까지로 한다.

第 40 條 (解散) 本院의 解散은 다음 各號의 境遇에 限한다.

1. 主務官廳이 法人設立許可를 取消한 때
2. 法人의 會員이 없게 되거나, 法人의 目的이 達成 또는 達成不能인 때
3. 會員 3分之2 以上이 出席한 總會에서 出席會員 3分之2 以上이 法人解散을 決議하였을 때

第 41 條 (清算) 本院을 解散하였을 때 에는 監事를 包含한 理事會의 構成員 全員이 清算人이 되며, 清算報告書를 主務官廳에 提出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42 條 (殘餘財產의 處分) 本院이 清算된 後 殘餘財產이 있을 때에는 包裝關係法人 團體 또는 包裝學術團體에 寄贈한다.

第 8 章 主務官廳의 承認 및 報告

第 43 條 (主務官廳의 許可 또는 承認事項) ① 本院의 業務執行에 있어, 다음 事項은 主務官廳의 許可 또는 承認을 얻어야 한다.

1. 定款 改正
2. 分院의 設置
3. 本院의 設立 目的에 相應한 收益事業
4. 其他 指示된 事項

② 前項 各號에 對한 主務官廳의 承認 要請은 指示된 期日 內에, 期日 指示가 없을 때에는 總會 또는 理事會 議決日로부터 2週間內에 하여야 한다.

第 44 條 (主務官廳에의 報告事項) 本院 業務執行에 있어, 다음 各號의 事項은 指示期日 內에, 期日 指示가 없을 때에는 그 行爲를 한 날로 부터 2週間 以內에 主務官廳에 報告하여야 한다.

1. 任員의 選任 및 解任
2. 每 事業年度의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
3. 每 事業年度의 事業報告 및 收支決算
4. 主要 業務 報告 (上下半期)
5. 總會 議事錄
6. 規程의 制定 또는 改廢
7. 法人의 住所 變更
8. 其他 指示된 事項

第 9 章 定款 改正

第 45 條 (定款改正 發議) 本 定款을 改正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 3分の 2 以上 또는 會員 3分の 1 以上の 發議가 있어야 한다.

第 46 條 (定款改正 決議) 本 定款의 改正은 總會에 附議하여 參席會員 3分の 2 以上の 贊成으로 決議한 後, 主務官廳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附 則 (制定 1997. 4. 7)

1. (施行日) 本 定款은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은 날로 부터 效力이 發生한다.
2. (經過措置) 本院 設立當時의 創立總會의 行爲 및 發起人會의 行爲는 本 定款에서 規定한 總會 및 理事會의 行爲로 본다.

(假稱)社團法人 韓國包裝振興院
1997年度 事業計劃 要點

〈 1997. 7. 1 - 1997. 12. 31 〉

I. 1997年度 事業計劃書

1. 基本運營 目標 및 方針

基本指標 : 1997年은 包裝振興 機構 組織 強化의 해

기 본 운 영 목 표	방 칙
1. 포장산업 진흥 계획 포장 중소기업육성시책(안) 및 장·단기 발전전략 수립	1. 1997년도 포장산업 (지류포장·플라스틱포장·금속포장·유리포장· 목재포장) 진흥계획(안) 및 포장중소기업육성시책수립 2. 포장산업 장단기 발전전략 수립 3. 포장재별 CAD·CAM System 구축 기초조사 4. 국내 포장산업 전수조사 및 경영합리화 방향설정 5. 국제화, 개방화 대응 포장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
2. 신 수출 증대 포장개발 체제 확립	1. 한국 수출포장 (10대상품) 경쟁력 실태조사 2. 수출포장 경쟁 취약 요인 분석 3. 각 포장재 1단계 Level Up 운동 전개 4. 대 포장 생산자 및 포장사용자 경쟁력 강화 포장소재, 포장설계, 포장 기법 지도 5. 한국적 포장설계, 포장칼라와 각국 선호 칼라 등 조사 6. 각 포장, 포장원자재, 포장기계의 직수출 및 해외 진출 입지 조사
3. 포장 및 포장소재의 신기술·신기능 과제 발굴 개발 지원	1. 포장재별 포장의 고기능 신기술 과제 발굴 개발 지원 2. 포장재별 원자재(포장소재)산업의 국제수준화 위한 지원 대책 수립 3. 포장 기계 (포장제조및 포장작업 기계)공업의 국제 수준화 위한 지원대책 수립

기본 운영 목표	방 법
3. 포장 및 포장소재의 신기술·신기능 과제 발굴 개발 지원	4. 포장산업의 공동 애로기술 타개 대책 수립 5. 포장생산 및 포장 사용기업 부설 포장기술 연구소 (과)설치 지도 6. 포장재 생산공장 현장 기술지도
4. 포장표준화·물류합리화 지도 기초 조사	1. 적정 포장설계 이론및 기술체계화 확립 2. 포장표준 계열 치수 전산업 홍보계도 3. 업종 (10대상품) 별 포장표준화 수용체계 구축 지도 4. 전산업 포장치수(단위포장 수송포장) 실태조사 및 1100×1100 Pallet 적용 분석 5. 수송장비 (트럭 등) 치수 실태 조사 6. 해외 포장 표준화·물류 SYSTEM 조사
5. 포장산업의 인재양성 및 인력수급의 원활화	1. 포장전문가 양성 및 교육연수 실시 2. 포장재별 포장생산 및 사용업체 사원 포장 교육실시 3. 포장산업 직업훈련원 설립 기본 계획 수립 4. 포장관련 기능직종 수요 조사 및 직종 신설 추진 5. 포장재 생산기업 사내 정신교육 중시 Program화 및 Staff 육성 6. 포장생산 설비의 High Tech화 대응 자동화 기계 조작기술 지도 교육
6. 포장산업 홍보 및 해외 정보기술 교류	1. 포장은 『상품의 얼굴이요, 물류의 시발』이란 인식 제고 홍보 지원 강화 2. 포장산업 경영 기술 종합 전문지 정기간행물 "Packaging World"발간 3. 1998 포장 전문 국제 전시회 개최 계획 수립 4. 해외 전시회, 국제 회의 참가 교류 협력
7. 포장산업의 조직화 및 협업체제 강화	1. 포장 관련 단체간 상호 정보교류 지원 2. 국제 포장 단체가입 및 해외 동업종 단체 List 조사 제공 교류 지원 3. 포장관련 기업간 정보교류및 유대강화 지원 4. 포장원자재 공업의 품종별 협업화 지원 5. 포장 기계(포장제조 및 포장작업기계)공업의 계열화 협업체제 지원

(假稱) 社團法人 韓國包裝振興院
第 1 代 任 員 名 單

〈任期：1997. 4. 7 - 2000. 2. 28〉

NO	區分	職名	姓名	所 屬	職 位	所 在 地
1	包	院 長	柳 熙 潤	韓國製紙工業協同組合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理事長 副會長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1 혜천빌딩 4F
2		副院長	金 鍾 仁	韓國非鐵金屬工業協同組合聯合會	會 長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2 백상빌딩 715
3	裝	副院長	柳 鍾 宇	韓國吾板紙包裝工業協同組合	理事長	서울 서초구 방배동 1669 성산빌딩 603호
4		理 事	尹 菊 鉉	韓國유리工業協同組合	理事長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53-20
5	團	理 事	吳 鍾 漢	韓國종이컵工業協同組合	理事長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9-8
6		理 事	李 光 文	社團法人 韓國環境紙類包裝協會	會 長	서울 송파구 방이동 452 금복빌딩 502호
7	體	理 事	李 大 佶	韓國紙函工業協同組合	理事長	서울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회관 706
8		理 事	李 喆 淳	韓國製罐工業協同組合	理事長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5 대광빌딩 607
9	包裝	理 事	金 容 旭	慶熙大學校 化學工學科	教 授	경기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 1번지
10		學界 · 學會	理 事	辛 東 韶	韓國펄프·종이工學會 韓國包裝學會	會 長
11	理 事		玉 璇 鍾	韓國物流學會	會 長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명지대본관 403
12		理 事	李 鎔 奎	江原大學校 製紙工學科	教 授	강원 춘천시 효자 2동 192-1
13	包	理 事	權 炳 茂	鮮光電源株式會社	代表理事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청동 730-7
14		裝	理 事	權 赫 弘	新大洋製紙株式會社	代表理事
15	素		理 事	高 光 益	和成機械工業株式會社	代表理事
16		材	理 事	金 順 在	大元包裝工業株式會社	代表理事
17	機		理 事	柳 芳 遠	金豐實業株式會社	代表理事
18		械	理 事	李 敬 雨	朝日製紙株式會社	代表理事
19	業		理 事	李 潤 茂	亞細亞製紙株式會社	代表理事
20		界	理 事	許 仁 熙	宇星產業株式會社	代表理事
21	團		理 事	鄭 鎬 發	韓一製罐株式會社	代表理事
22		體 · 學會	理 事	許 容 三	韓國輸出包裝工業株式會社	代表理事
23	監 事		俞 吉 相	韓國紙袋工業協同組合	理事長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16 영창빌딩 401
24		監 事	趙 炳 默	韓國木材工學會	會 長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 임업연구원 임산공학부내